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11.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과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	2207642	김상훈의원	2025. 1. 20.	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25. 4. 24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	2209895	이종욱의원 · 신영대의원	2025. 4. 16.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25. 9. 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

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(2025. 9. 29.)에서 위
2건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
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.

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25. 9. 30.)에서 경제재
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
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가.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9조).
- 나.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43조의2 신설).
- 다.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(안 제45조의2 신설).
- 라.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(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).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한국수출입은행 및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

제6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연차보고)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
2. 기금의 지원실적
3.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

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)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, 「감사원법」 또는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·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.

제8장(제49조 및 제50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장 벌칙

제49조(벌칙)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제50조(벌칙)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4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9조(기금의 재원) ① ----- ----- 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한국수출입은행 및 「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의 출연금</u> 4.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3조의2(연차보고) ① <u>재정경제 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 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 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1. <u>기금의 재원조성 현황</u> 2. <u>기금의 지원실적</u> 3. <u>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</u> 4.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사항

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2(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)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, 「감사원법」 또는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·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.

제8장 벌칙

제49조(벌칙)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
<u><신 설></u>	<u>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<u>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</u> <u>제50조(벌칙)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